# 비밀유지협약서

㈜하이닉스반도체 와 ㈜아이피에스는 양당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제공하는 제반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비밀 유지협약("협약")을 체결한다.

## 1. 비밀정보의 정의

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양 당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당사자의 Idea, Know-how 등으로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.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정보제공자라 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타방 당사자를 정보수령자라 한다. 비밀정보는 제 2 조에 따라 구두, 서면, 도표, Tape, Diskette, 기타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. 단, 다음과 같은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.

- 1) 본 협약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없이 공공매체나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
- 2)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미 획 득한 정보
- 3)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한 정보

#### 2. 비밀표시

- (1)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를 문서, 서면 등의 유형으로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는 정보제공자는 동 비밀정보에 "비밀", "대외비" 등의 표시로 비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2)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 등의 무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제 공자는 제공 당시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제공 후 7 일 이내에 제(1)항에 따라 동 비밀정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.

## 3. 비밀 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취급

- (1)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수령자는 자신의 비밀정보에 대한 보 안규정에 따라 동 비밀정보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개를 막아야 한다. 단, 정보수령 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 로 동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케 할 수 있다.
- (2)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제공자의 소유이며, 정 보수령자는 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- (3) 본 협약이 중도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,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와 동 비밀정보의 모든 복사본 및 파생물을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  - 4. 비밀 유지 등 의무 기간

본 협약을 통하여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무단 사용금지 기간은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 년간으로 하며 협약의 중도 해지 또 는 만료의 경우에도 동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존속한다.

## 5. 기 타

- (1)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.
- (2)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로써만 수정될 수 있다.
- (3) 정보수령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밀정보의 부당한 공개 또는 누출로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- (4)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입수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이 개발한 특허 등의 일체의 지적재산은 정보제공자의 소유로 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.

2005년 08월 17일

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-1 ㈜하이닉스반도체

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 ㈜아이피에스

대표이사 장호승

(<u>OI</u>)